

인천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나604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나6049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7 선고 2019가단2157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오재혁

변론 종결 2020. 8. 25

판결 선고 2020. 10. 27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7. 선고 2019가단215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2. 1.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파이프조 골스레트지방 단층 D 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0분의 38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관하여 매매대금 5, 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건물을 10년 동안 배타적으로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포시 E 지상 건물 197. 4㎡ 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을 제 14내지 16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위조를 주장하고 있는 점,위 매매 계약서의 매매 대상이 지분으로서의 이 사건부동산이 아닌 점,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가 원고의 위 매매 계약서 위조등을 이유로 원고를 사문서 위조등으로 고소하자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도 위 매매계약서의 구체적 작성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고의 위 매매 계약서 위조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 1067 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12. 승소판결을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판사 임진수판사 신정수